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18
----------	-------

발의연월일 : 2025. 7. 22.

발 의 자 : 배준영 · 김민전 · 강명구
구자근 · 이인선 · 김미애
조은희 · 김정재 · 이종배
최은석 · 김종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씩 감면하여 주고,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축소할 경우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
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00분의 50을 각각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감면한다. 1. ~ 3. (생략)	-----<u>2028년 12월 31일</u>-----. ②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1. ~ 3. (현행과 같음)
--	--